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유상민  
전화 02-3270-4391

## 보 도 자 료

2024. 4. 26.(금)

### 제 목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고소 남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 변호사법위반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하여,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1,000회 이상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주범 1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4. 26.)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와 저작권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도적으로 토렌트에 콘텐츠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다운로드를 유인한 후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 :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

● 향후에도 검찰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총 7명)

- 주범 : A (남, 41세, 작가, 구속), B (여, 43세, 저작권관리사)
- 공범 : C (남, 48세, 프로듀서), D (남, 52세, 영화감독)
- 방조범 : E (남, 40세), F (남, 47세), G (여, 43세)

### ● 공소사실 요지

- (A·B·C·D) A와 B 부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C와 D를 통해 소개받은 영화제작사 4곳과 체결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하여 '23. 6.경부터 '24. 2.경까지 1,000건 이상을 고소하고 합의금 약 9억원을 받음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 (E, F, G) '23. 8.~9.경 A와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대량 고소에 필요한 IP주소 수집, 자료정리, 전화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 [변호사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방조]

## 2 수사 착수 배경

- 검찰은 '23. 10.경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B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대리하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은 '23. 12.경 새로운 영화제작사 2곳과 B의 배우자 A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자로서 함께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제작사가 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만을 작성하여 고소에 필요한 외형만 갖추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폭넓은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3

## 수사 경과

- '23. 8.~'23. 10. 저작권법위반 송치·불송치 사건 접수, 기록 검토
- '23. 11.~'24. 1. A, B 인지, 계좌추적,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 '24. 2.~'24. 3. C, D, E, F, G 인지, 계좌추적, 압수물 분석
- '24. 4. 16./18. 피고인 A에 대하여 직접 구속영장 청구/발부  
※ 검사가 구속적부심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진술
- '24. 4. 26. 피고인 A 구속 기소, 나머지 6명 불구속 기소

### 4

## 수사 결과

**합의금을 노리고 무더기로 고소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 주범인 A, B 부부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업무절차를 통해 1,000회 이상 대량으로 고소하여 단기간 내에 9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 B는 이전에 A가 창작한 소설의 인터넷 유포자를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하지 않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경험을 이번 범행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이들은 모니터링 및 증거수집 → IP주소 정리 → 관할 경찰서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우편 발송 → 전화 응대(합의금 조율, 입금 계좌 안내 등) → 수익금 정산 순서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설정했습니다.
  - 범행 초기에는 가족을 동원하다가, 관리 대상 영화를 추가하여 업무량이 폭증하자 A의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였습니다.

## 허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을 체결,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 주범인 A, B 부부는 형사고소를 위해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영화제작사 대표와는 별도로 이면약정을 체결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하였습니다.
  - 저작권자가 아닌 B가 영화제작사 2곳을 동시에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A와 B는 사후적으로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영화제작사 대표와는 위 양도계약서를 고소대리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이면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관계인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였습니다.

## 불법다운로드를 유인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중대범죄입니다.

- A는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흥행에 실패한 영화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저작권 등록하여 유포한 후 또다시 대량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더 많은 불법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 5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 고소가 폭증한 추세를 틈타, 불법 대량 고소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콘텐츠 다운로드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초래한 '저작권 괴물' 일당의 범행을 적발하여, 그 전모를 상세히 규명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은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남고소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